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미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76 발의연월일: 2020. 11. 16.

발 의 자:윤미향·송옥주·안호영

양이원영・윤준병・이규민

이성만・이수진(비)・이탄희

이학영 · 장철민 · 정춘숙

정태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산재보험법은 택배 노동자 등 14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, 근로복지공단의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79.7%에 달하고 있어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.

최근 택배기사 과로사로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, 현행법은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시 과거고용이력에 따라 최대 3년치 보험료를 소급징수하도록 하고 있어, 영세사업주가 재정부담으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과거 입법례를 참고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, 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

을 할 경우, 신고일 이전 보험료 징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함으로써 특고 노동자의 신속한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,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, 향후 보험료 납부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 하려는 것임(제22조의3 및 제22조의4).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3의 제목 중 "고용보험료등"을 "산재보험료등"으로 하고, 같 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 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"를 "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"으로,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"를 "특수 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제공 신고일(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내용 등에 대한 신 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이전의 산재보험료"로. "연체금"을 "가산금· 연체금"으로, "고용보험료등"을 "산재보험료등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 호 및 제2호 중"「고용보험법」 제1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취득 한 피보험자격의"를 각각 "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제3항에 따 른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무제공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등의 면제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1. 사업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: 산재보험료등의 전부
- 2.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: 산재보험료등의 100분의 50

제22조의4의 제목 중 "고용보험료등"을 "산재보험료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등"을 "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등"으로, "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"를 "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,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제2조(산재보험료등 면제의 유효기간)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산재보험료등 면제의 적용에 관한 특례) ①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제7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또는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의 산재보험료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2조의3(고용보험료등의 면제 제22조의3(산재보험료등의 면제 에 관한 특례) ① 「산업재해 에 관한 특례) 제21조제1항에 보상보험법」 제125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사업주가 다음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-----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-----특수형태근 격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 로종사자 노무 제공 신고일(특 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(이 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하 "고용보험료등"이라 한다)의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태근로종사자의 업무내용 등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있다. 이전의 산재보험료--------가산금·연체금-----산재보 험료등-----1.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 계의 신고 및 「고용보험법」 -----「산업재해보상 제1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보험법」 제125조제3항에 따 른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취득한 피보험자격의 신고 에 대한 노무제공----2. 사업주가 이미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

경우에는 「고용보험법」 제1 ------「산업재해보상보 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취 득한 피보험자격의 신고

<신 설>

제22조의4(고용보험료등의 면제 제22조의4(산재보험료등의 면제 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 한 특례) 제22조의3에 따라 고 용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사업주 에 대한 지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험법」 제1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무제공----
-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등 의 면제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- 1. 사업주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 우: 산재보험료등의 전부
- 2.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부 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신고를 한 경우: 산재보 험료등의 100분의 50

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 한 특례) 제22조의3제1항에 따 라 산재보험료등-----

---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 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, 직 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